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에 대한 시행규칙

(2002년 6월 24일 공표)

첫 번째: 정의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 최고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운영위원회위원장

청장: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장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SAGIA: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외국인투자자: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모든 사원이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갖지 아니한 법인

외국투자: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이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활동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외국자본: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이 시행규칙에서 외국자본이란,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다음의 재산과 권리를 의미한다: (1)현금, 금융어음, 상업어음

(2)자본을 증대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 사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투자로 발생한 수익

(3)투자에 관련한 기계, 도구, 설비, 부품, 운송수단,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부동산

(4)허가, 지적재산권, 기술지식(Idea), 이행능력, 생산방식과 같은 지적 권리

법규: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

상품제조업체: 산업제품과 농업제품과 식물상품과 동물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사작업을 이행하는 업체

규칙: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에 대한 시행규칙

센터: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규칙의 제9조에 명시한 서비스센터

두 번째: 투자분야

제2조 투자청은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의 제3조에 따라 제외한 활동 외 모든 투자활동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내 고정적 또는 일시적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허가를 관할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외국투자제외활동목록을 검토한 후 최고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제4조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이 규칙에 따라 활동을 허가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두 형태로 구성된다: (1)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기업

(2)외국인투자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업

세 번째: 혜택과 특혜와 보장

제5조 외국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특혜와 보장이 제공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1481년(이슬람력) 12월 23일 제50차 국왕령에 따라 공포한 「국가산업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규」에 명시한 혜택

(2)1421년(이슬람력) 4월 17일 제15차 국왕령에 따라 공포한 「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규」에 따라 허가한 활동의 이행 또는 투자자 및 투자기업직원의 거주에 필요한 부동산소유

(3)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통하여 제공되는 특혜

(4)법정판결 없이 투자재산전체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재산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법정판결 또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재산과 재산권을 몰수 및 박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5)외국인투자자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 지분판매 또는 사업청산으로 발생한 수익 또는 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국외로 재차 송금하고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할 수 있다.

(6)사원과 제3자 간 지분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7)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직원들을 보호한다.

(8)「산업개발기금에 관한 법규」에 따라 산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지급을 연기하여 사업에 수익이 발생한 해에 세금을 납부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네 번째: 허가조건과 규정

제6조 외국투자허가발급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활동이 외국투자제외활동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상품과 생산방식과 원료에 대한 설명서와 기준은 사우디아라비아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해당사안에 대한 국내법규가 없는 경우 유럽연합 또는 미국 또는 일본의 법규를 따른다.

(3)(ㄱ)농업사업의 투자자금규모는 2,500만사우디리얄 이상이어야 한다.

(ㄴ)산업분야의 사업의 투자자금규모는 5,000만사우디리얄 이상이어야 한다.

(ㄷ)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의 투자자금규모는 200만사우디리얄 이상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한 구역 내 설립한 사업 또는 높은 수준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또는 수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최소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외국인투자자는 이전에 위법행위로 최종판결이 선고된 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5)외국인투자자는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외국에서 상업 또는 금융분야의 위반행위로 판결을 선고 받은 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6)허가발급 시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체결한 국제협정 또는 지역협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외국인투자자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1건 또는 수건의 활동에 대한 1건 이상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1)이 규칙의 제6조에 명시한 조건을 적용한다.

(2)수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출한, 동일한 활동에 대한 허가신청서는 기존의 사업에 대한 확장으로 본다.

(3)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이 규칙을 검토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또는 외국 또는 공동투자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시행규칙의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 번째: 허가절차

제9조 투자청은 투자지침을 작성한다. 투자지침에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허가취득절차와 그 개정내용,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허가와 정부취득 전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 증서, 문서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면세, 보장내용에 대하여 명시한다. 또한 지침에는 다음의 각 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한다: (1)「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그 시행규칙과 시행결정

(2)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규칙과 시행규정

(3)「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규」

(4)「국가산업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규」

(5)「노동 및 노동자에 관한 법규」

(6)「자카트(희사), 세금, 세관에 관한 법규」

(7)「법적 기소에 관한 법규」

(8)「형사절차에 관한 법규」

(9)「변호에 관한 법규」

(10)회사에 관한 법규(상업등기, 상업사기, 은행감시)

(11)지적재산권보호법규(상표에 관한 법규, 저작권보호법규, 특허에 관한 법규)

이 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제10조 외국투자허가신청서는 투자지침에 명시한 필요한 보고서와 문서를 첨부하고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허가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후 서비스센터 내 신청서접수처에 제출한다. 센터는 허가신청인에게 신청서등록번호와 그 일자가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접수증을 발송한다.

제11조 투자청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허가신청서와 관련문서를 수령하고 허가에 대한 결정을 공표한다. 필요한 경우 문서의 원본을 수령한 후 허가에 대한 결정문을 발송한다.

제12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규칙과 운영위원회가 공표한 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허가에 대한 결정문은 30일 이내에 청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서명한 후 공표하며, 이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서비스센터는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또는 그 밖의 방식을 이용하여 신청서에 대한 최종결정문을 투자자에게 발송한다.

제14조 투자청이 허가신청 또는 변경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는 거부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한다.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우 허가신청인은 이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기관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외국인투자자의 의무

제16조 허가를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청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활동이행에 필요한 절차이행을 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를 표명한 경우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총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제17조 투자청이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지정기간의 연장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기간을 연장한 후 투자자에게 투자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하고, 허가가 취소된 투자자는 취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투자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허가를 통하여 공표한 기본조건과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청의 동의 하에 개정된 부분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소유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계에 관한 법규와 허가를 취득한 회계사무소가 승인한 예산안을 준수하고, 투자청이 요청한 통계와 관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위반행위

제20조 청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서면으로 지명한 투자청의 수인의 직원은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그 시행규칙적용을 감시하고,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사업장활동에 관한 장부, 문서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수인의 투자청직원은 업무 상 열람한 정보와 문서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그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행위, 허가조건, 적용규정, 처벌적용에 관하여 명시한 "위반행위와 처벌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제22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그 시행규칙과 허가조건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투자자에게 위반행위시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준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처벌규칙에 명시한 벌칙을 적용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는 최소3인으로 구성된 자체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구성원에는 1인의 법정자문위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업무이행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와 그 시행규칙과 허가조건에 대한 위반행위를 심리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증언 및 변호를 청취하고 위반행위와 처벌규칙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제안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제24조 제23조에 따라 처벌결정이 공표된 투자자는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한다. 처벌확정을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는 이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기관에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분쟁해결위원회

제26조 운영위원회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의 제13조2항에 따라 "투자분쟁해결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최소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외국투자에 관한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투자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동업자 간 발생한 분쟁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1403년(1982년) 7월 12일 제46차 국왕령을 통하여 공포한 「조정에 관한 법규」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법규」에서 명시한 분쟁관할기관으로 본다.